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17-9
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7. 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개정사유

동일내용이 불필요하게 중복되어 있는 용어 정비 및 소속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방출신 독신·신규 무주택공무원의 주거안정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“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”을 “소속공무원”으로 변경 (안 제3조)

나. 지방출신 독신·신규 무주택공무원의 주거안정지원 조항 신설 (안 제6조)

## 3. 개정조례안 : 불임 참조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7조(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)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규제여부 :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에 해당되지 않음

마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 : 2016.12.8. ~ 12.28. (제출된 의견 없음)

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3)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: 권고사항 있음

평가대상	권고사항	조치사항
제8조 (후생복지 심의위원회)	<p>※ 가정복지과 권고안</p> <p>제8조(후생복지심의위원회) ③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하되,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</p>	<p>○ 권고사항 미반영</p> <p>- 해당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소관 국장·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위촉직 위원의 경우 1명으로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개선의견은 실효성이 없음</p>

- 4)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
- 5)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
- 6) 비용추계서 1부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”을 “소속공무원”으로 한다.

제6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소속공무원 중 지방출신 독신·신규 무주택공무원의 주거안정지원 시설 등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적용범위) ①이 조례는 <u>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에게</u> 적용한다.</p> <p>②·③ (생략)</p> <p>제6조(후생복지시설의 운영) 구 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3조(적용범위) ①----- <u>소속공무원</u>-----</p> <p>-.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후생복지시설의 운영) 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소속공무원 중 지방출신 독신·신규 무주택공무원의 주거안정지원 시설 등</u></p>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## I. 비용추계 요약

#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-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6조(후생복지시설의 운영)
- 지방출신 독신·신규 무주택공무원의 주거안정지원 시설 건립에 대한 비용 발생

### 2. 비용추계의 전제

- 주거안정지원 시설 건립에 관한 연도별 소요예산 및 내역
- 비용추계기간 : 2017. 8. ~ 2018. 12.

### 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구분		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		-	-	-	-	-	-	-
세입	-	-	-	-	-	-	-	-
	소계(a)	-	-	-	-	-	-	-
세출	직원기숙사 건립 설계비	148,000						148,000
	직원기숙사 건립 공사비		3,802,000					3,802,000
	소계(b)	148,000	3,802,000					3,950,000
□ 총 비용(a-b)		148,000	3,802,000					3,950,000

4. 재원조달 방안 : 2017년, 2018년 구비(일반회계)로 편성

5. 덧붙이는 의견 : 구체적인 세출은 차후 변경될 수 있음.

### 6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안정행정국 총무과 추재홍
연 락 처	02-3153-8222